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람	기관의장

공보

제609호 2018. 6. 14.(목)

고 시

제2018 - 7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1

제2018 - 80호 도로명주소 고시 ····· 2

공 고

제2018 - 668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제2018 - 66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12

제2018 - 678호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

제2018 - 679호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2

제2018 - 680호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28

제2018 - 69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34

제2018 - 695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 35

제2018 - 698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 · 37

알 림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8 - 5호 보 상 계 획 공 고 ····· 41

회 람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8 - 7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화천)

2. 성 명 : 최승O

3. 주 소 :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

4. 점용목적 : 입간판 설치 및 사용

5. 점용위치 :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331-2

6. 점용면적 : 1㎡

7. 점용기간 : 2018. 6. 1. ~ 2023. 5. 31.

남해군 고시 제2018 - 8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91-1,91-2 외 2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부 여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91-1, 91-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1974-37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38-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006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3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695-1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92-2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4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884-2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54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51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54-6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6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49-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127-7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7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827-3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37	20090427	남해본섬과 창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29-9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강진만로 398	20090427	남해본섬과 창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23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58-20	20090427	독일에 파견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독일거주교포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독일마을이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
1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60-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103	20090427	독일에 파견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독일거주교포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독일마을이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
1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386-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 8	20090427	동쪽의 두, 세번째 행정구역이라는 뜻으로 지어 부른 방위지명인 이동면과 삼동면을 연결하는 도로임
1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521-9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 674	20090427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스포츠파크로 향하는 길임을 반영
1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616-6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로 247-3	20090427	행정구역명 이용. 옛 지명인 우물개의 한자표기임
1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90-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로 330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오용에서 연곡, 적량으로 연결되는 도로임
15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남양리 257-2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창남로 368	20090427	독립지사 창남 윤병호선생을 기리기 위함. 창남은 설천 문의에서 출생하여 대동청년단에 가입,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노량공원에 그의 송공비가 세워져 있음
1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산 149-1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447-40	20090427	고려 충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1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123, 산8-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809번길 33-3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516-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나길 14-8	20100915	망운로21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51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나길 14-10	20100915	망운로21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564-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나길 14-51	20100915	망운로21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280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2번길 45-38	20091023	미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345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2번길 49	20091023	미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67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성남로78번길 39	20091023	성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10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105번길 3-5	20090427	스포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64-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122번길 37-17	20090427	화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340-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38번나길 19	20100915	화전로38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폐 지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450-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089	20180511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산 149-1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447-40	20180530	20090427	고려 충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8 - 668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의 면제·감면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적법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축한 체육시설(무도관)을 추가로 정의 (제2조)

나. 상위법령에서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수정(제13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면제

- 체육진흥, 군을 대표하여 대회 출전 연습 면제사항 삭제
- 인조구장을 5일 이상 전지훈련 및 초·중·고 축구팀 훈련장, 장애인·노인·군인의 무료 사용을 80% 감면 대상으로 수정

❍ 사용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사용료 감면

– 남해군 체육회 주관 행사, 군민이 천연·인조구장 사용, 5일 이상 전지훈련 시 인조구장 사용, 초·중·고 축구팀이 인조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학교의 체육활동 및 정규·방과 후 활동

❍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용료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유족), 5. 18 민주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국민기초 수급자, 노인·청소년·어린이 대상 행사, 5일 이상 전지훈련 단체, 군민이 야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병역명문가의 대상자 및 가족

다. 행정재산 관리 용어에 맞게 관리위탁으로 수정(제20조)

라. 사용료의 규정이 누락되었거나 신축한 체육시설의 사용료 신규 규정(별표)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2,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26 국민체육센터 내 체육시설사업소

○ 연락처 : 전화 055-860-8662, 팩스 860-3749, e-mail : cho7105@korea.kr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금해정”을 “금해정, 무도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1. 남해군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2. 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천연·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주3회(1일 1회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3.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군에서 체류하는 단체가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초·중·고 축구팀이 인조잔디구장을 훈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 18 민주국가유공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8. 노인, 청소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9.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군에서 5일 이상 체류하는 단체
10. 군민이 스포츠파크 내 야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1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 및 가족

④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제목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근거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7.12.29.>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8.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본조신설 2012.7.17.]

남해군 공고 제2018 - 66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한국전력공사 진주전력지사장	주소	경남 진주시 도동로135번길 6
소하천명		오곡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1802번지 외 12필지		
	면적	644㎡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8. 6. 1. ~ 2018. 12. 31.		
	목적 및 사유	철탑 92호의 보수공사를 위한 진입로 사용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남해군 공고 제2018 - 678호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서 체육시설 이용료의 면제·감면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적법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수정(제11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면제
   - 체육진흥 또는 후학양성, 군을 대표하여 대회 출전 연습 면제사항 삭제
   - 남해군체육회 또는 남해군생활체육회가 주최하는 대회의 무료사용을 80% 감면 대상으로 수정
   ○ 이용료의 100분의 80 사용료 감면
   - 남해군 체육회 주관 행사, 학교의 체육활동 및 정규·방과 후 활동
   ○ 이용료의 100분의 50 사용료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유족), 5. 18 민주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국민기초 수급자, 3명이상 다자녀 가정, 수영장 월이용 임산부, 5일 이상 전지훈련 목적 체류 단체,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에 따른 전입세대, 병역문가의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이용료의 100분의 30 사용료 감면 : 도립남해대학 재학생

○ 이용료의 100분의 20 사용료 감면 : 일반인, 청소년, 군인이 수영장과 헬스장을 동시 이용 및 일반인이 3개월 이상 월 이용료 납부시(추가)

○ 이용료의 100분의 10 사용료 감면 : 변동없음

- 수영장 이용 월회원 중 만10세이상 만55세이하 여성, 남해사랑카드 소지자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2,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26 국민체육센터 내 체육시설사업소

○ 연락처 : 전화 055-860-8662, 팩스 860-3749, e-mail : cho7105 @korea.kr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1. 남해군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 18 민주국가유공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8.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3명 이상)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

9.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회원 중 임신한 사람

10.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군에서 체류하는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세대

1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 및 가족

④ 경남도립남해대학 재학생은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일반인, 청소년 또는 군인이 수영장과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과 일반인이 3개월 이상의 월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0분

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와 남해사랑카드 소지자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하며,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이용료의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체육진흥 또는 후학양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3.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남해군체육회 또는 남해군생활체육회가 주최하는 대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1. 남해군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 18 민주국가유공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8.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9. 남해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
1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회원 중 임신한 사람
11.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다가 2인 이상이 남해군으로 전입한 세대(세대당 1명에 한하여 2년 동안 감면한다)

③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남해군에서 5일 이상 체류하는 단체 또는 경남도립남해대학 재학생에게는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일반인, 청소년 또는 군인이 수영장과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와 남해사랑카드 소지자에게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하며,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8.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3명 이상)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
9.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회원 중 임신한 사람
10.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군에서 체류하는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세대
1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 및 가족

④ 경남도립남해대학 재학생은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일반인, 청소년 또는 군인이 수영장과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과 일반인이 3개월 이상의 월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와 남해사랑카드 소지자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하며,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7.12.29.>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8.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본조신설 2012.7.17.]

남해군 공고 제2018 - 679호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의 정의 및 적용범위 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4조)
다. 병역명문가 예우 등 (안 제5조)
다. 병역명문가의 우대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라.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마련 (안 제7조)
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 남해군수(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 연락처 : 전화055-860-3432, 팩스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안전총괄과 민방위팀(☎055-860-3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 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하 “가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등)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예우대상자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이순신 순국공원 입장료 및 영상관 관람료
2. 파독전시관 관람료
3. 원예예술촌 입장료
4. 유배문학관 관람료
5. 거북선 관람료
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7.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8.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9. 체육시설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제10조제1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②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③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④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⑤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⑥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 중 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⑦ 남해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남해군 공고 제2018 - 680호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조례 상 규정 된 적립금의 조성 사유 미비점 보완
   ○ 흑자 재정운용 및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기금 조성 필요

3. 주요내용
   ○ 적립금의 조성(안 제3조)
   - 제3조제1항2호 중 “120”을 “110”로 한다.
   -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6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2) 연락처 : 전화 055-860-3063,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참여예산팀(전화 055-860-3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출자	성 명(명 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2호 중 “120”을 “110”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 2.(생 략)	1. ~ 2.(생 략)
제3조(적립금의 조성) ①(생략)	제3조(적립금의 조성) ①(현행과 같음)
1.(생략)	1.(현행과 같음)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110----------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 <신설>	③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4. ~ 8.(생 략)	4. ~ 8.(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4. 생략

④ 국가는 제3항의 기관을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69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조수0	주소	경남 진주시 의곡길
소하천명		신보탄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64-42번지		
	면적	3㎡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8. 6. 8. ~ 2019. 6. 7.		
	목적 및 사유	배수관 매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남해군 공고 제2018 - 695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대명리조트 남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2. 공사명 : 대명리조트 남해 조성사업

3. 출입구간 :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 358-2번지 외 1필지(붙임 참조)

4. 출입기간 : 2018. 6. 11. ~ 2020. 12. 31.

5. 출입사유 : 토지 측량, 지장물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 등

6. 사업시행자 : ㈜대명레저산업

7.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입토지조서 1부. 끝.

[붙임] 토지출입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고
	읍·리	지번				주소	성명		
1	미조면 송정리	산358-2	임야	8,176	8,176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26	주식회사한국.에스.알.씨.	압류(남해군)	
2	미조면 송정리	산358-8	임야	47	47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26	주식회사한국.에스.알.씨	압류(남해군)	

남해군 공고 제2018 - 698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

남해군 고시 제2017-136호(2018.1.11.)로 기 실시계획인가된 남해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2-37호)의 인가사항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1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구분	종류	위치	비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남해군계획시설사업 (교통시설 : 도로)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일원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결 정(m)		금 회(m)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폭	연장	폭	연장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소로	2	37	8	8	237	8	115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도시건축과)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사업기간

구분	사업기간		비 고
	당초	변경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2017.5.2. ~ 2018.6.30.	2017.5.2.~2018.12.31.	

5. 공람기간 :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6.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소유권 변동사항 정정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1 참조

8.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에 비치】

붙임 :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1부.
2. 의견서 1부. 끝.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조서

1. 공사명 : 도시계획도로(소로 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합 계				925	824	-	-	-	-	-	-
1	서변리	305-1	대	18	18	최0익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4-3	-	-	-	-
2	서변리	305-15	잡	2	2	최0익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4-3	-	-	-	지분 (53/464)
				공유자	-	남해군	-	-	-	-	지분 (411/464)
3	서변리	306-15	도	18	18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	-	-
4	서변리	27-7	대	504	504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	-	-
5	서변리	366-25	대	282	282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	-	-

[붙임 2] 의견서

의 견 서

사업명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개설공사	
사업자	남해군수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의견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8 - 5호

보 상 계 획 공 고

『천하수원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편입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5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 위치	사 업 량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천하수원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557-1 일원	진입도로 개량 L=800m, B=5m	2018. 7. ~ 2018. 12.	남해군수

2. 보상내역 : 토지 36필지/6,921㎡ 및 그 토지상의 지상물건과 권리 등 일체
(붙임 토지조서 참조)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18. 6월 이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개별 통지함)

나. 보상방법 :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 보상금 공탁 및 수용

4. 보상계획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8. 6. 7. ~ 2018. 6. 22.(16일간)

나.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055-860-3324)
경상남도 남해군 홈페이지

다. 열람 및 이의신청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보상금 지급 방법

-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등기이전 후 현금으로 지급하며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별도 통지합니다.

6. 기타 사항

- 보상계획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수취거부 등으로 개별 통보를 받지 못하는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계획입니다.

붙 임 : 편입토지 내역 1부. 끝.

천하수원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조서

용지 번호	소재지 (경남 남해군)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미조면 송정리	1557-1	천	68	68	국토교통부	국
2	"	1398-21	도	14	14	국토교통부	국
3	"	1398-20	전	1	1	1397	이*수
4	"	1398-19	전	12	12	1397	이*수
5	"	1476	도	1,211	689	국토교통부	국
6	"	1398-18	전	25	25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장*태
7	"	1401-6	전	54	54	부산 서구 암남동	이*실
8	"	1401-5	대	50	50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이*옥
9	"	1401-4	대	10	1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황*외1인
10	"	1402-3	도	23	23	부산 영도구 봉래동	이*원
11	"	산217-2	임	109	109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이*옥
12	"	1402-2	도	30	30	부산 영도구 봉래동	이*원
13	"	1402-4	전	38	38	부산 영도구 봉래동	이*원
14	"	산216-2	임	110	1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정*학외3인
15	상주면 상주리	2173	천	20,004	136	국토교통부	국
16	미조면 송정리	산216-1	임	103	1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정*학외3인
17	"	산215-5	임	91	91	울산 북구 화봉동	홍*표
18	"	산215-3	임	295	295	진해시 석동	이*근
19	"	1406-2	답	374	274	부산 북구 화명동	홍*덕
20	"	산211-1	도	1,940	833	국토교통부	국
20-1	"	산211-1	도	1,940	322	국토교통부	국
21	"	산211	임	2,958	1,173		이*세
22	"	산211-9	임	3	3	남해군 미조면	홍*희
23	"	산211-8	임	81	68	1547	손*모
24	"	산211	임	2,958	418		이*세
25	미조면 송정리	산211-7	임	105	94	1547	손*모
26	"	1415-14	답	9	9	1381-1	홍*표
27	"	산198-8	임	716	670	부산 북구 덕천동	장*래
27-1	"	산198-8	임	716	46	부산 북구 덕천동	장*래
28	"	1415-13	답	20	20	1381-1	홍*표
29	"	산198-9	임	5	5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권
30	"	1415-15	장	99	99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박*우
31	"	1415-16	도	44	44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박*우
32	"	산210-3	임	118	118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박*우
33	"	산204-10	임	170	165	국토교통부	국
34	"	1419-2	답	21	21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이*남
35	"	산204-8	임	354	354	부산 서구 암남동	김*자
36	"	산215	임	7,450	20	진해시 석동	이*근